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654

발의연월일: 2024. 9. 4.

발 의 자: 추미애 · 전재수 · 이수진

김 현 · 이성윤 · 송옥주

황 희 · 부승찬 · 이재정

강선우 · 노종면 · 이훈기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딥페이크 범죄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디지털 성범죄는 영상물 유통 플랫폼의 음성화, 빠른 유포 속도로 인해 피해자가 피해 규모 뿐만 아니라 피해 발생 사실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가 많음.

하지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수사기관은 피해 발생 초기에 신속하게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하나 신고·발견 즉시 영상물 차단·삭제 관련 조치를 위한 법적근거가 없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 요청 을 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신고는 수사기관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신고를 받거나 범죄 현장 등을 발견한 경우 즉각적인 피해 영상물을 확산 차단 조치하도록 하여, 불법 영상물의 확산을 막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4조의4 신설).

법률 제 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4(응급조치) 제13조, 제14조의3에 기재된 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거나 위반 또는 위반 의심 사실을 발견한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나 제14조의2의 영상물등,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 채증 및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의 관리 ·운영자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한다)에게 해당 영상물 또는 게시판에 대한 삭제·차단 요청
- 2. 범죄행위의 제지 및 처벌 경고
- 3. 피해 신고 · 삭제 요청 등 관련 절차 안내
- 4.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 인도(단,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에 한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4조의4(응급조치) 제13조, 제1
	4조의3에 기재된 범죄에 대하
	여 신고를 받거나 위반 또는
	위반 의심 사실을 발견한 사법
	경찰관리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나 제
	14조의2의 영상물등, 편집물
	등 또는 복제물 채증 및 인
	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
	판・대화방의 관리・운영자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
	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
	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서비
	스제공자"라 한다)에게 해당
	영상물 또는 게시판에 대한
	<u>삭제・차단 요청</u>
	2. 범죄행위의 제지 및 처벌
	<u>경고</u>
	3. 피해 신고·삭제 요청 등
	관련 절차 안내
	4.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u>피해자 인도(단, 피해자가 동</u> <u>의한 경우에 한정한다)</u>